

## 식품(개정 No.3) 규정 2020

특정 식품에 있어서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을 개정함.

### 제 3부칙 개정

6. 식품규정 제 3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- (a) 표 3열의 estimated by weight 삭제
- (b) 표 1열의 식품유형(a) 무수(anhydrous)식용유지 및 지방, 마가린, 1g당 비타민A 함량이 100,000I.U.를 넘지 않는 비타민 유지에 대한 로즈마리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삭제
- (c) 표 1열의 식품유형(g) 건조육에 대한 로즈마리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삭제
- (d) 2절 뒤에 “3. 다음 표의 1열에 명시된 식품 유형은 2열에 명시된 수준(ppm)의 로즈마리 추출물을 함유할 수 있음” 추가함.

특정 식품	ppm (카르노솔과 카르노산의 합으로 표현)
(a) 건조육	150
(b) 건조 소시지	100
(c) 식용 식물성 유지 및 지방(올리브유 제외)	50
(d) 생선 및 조류 유지	50
(e) 라드, 소지방(우지), 가금류 지방, 양지방(양지) 그리고 돼지지방(돈지)	50
(f) 가공 육류(건조 소시지 제외)	
( i ) 지방함유 10% 미만	15(지방 또는 유지 기준)
( ii ) 지방함유 10% 이상	150(지방 또는 유지 기준)
(g) 가공 견과류(코팅한 견과류 및 혼합 견과류 포함)	200(지방 또는 유지 기준)
(h) 소스, 그레이비, 드레싱 및 혼합물	100(지방 또는 유지 기준)
(i) 간식류-감자, 시리얼, 밀가루 또는 전분 기반 (뿌리 및 덩이줄기, 펄스 및 콩과류로 부터)	50(지방 또는 유지 기준)
(j) 채소, 견과류, 씨 스프레드	200(지방 또는 유지 기준)

**제 5부칙 제2부 개정**

8. 식품규정 제 5부칙 제2부 제2절은 (b)목에 "lutein"이라는 단어 직후에 "lutein esters from *Tagetes erecta*"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개정함.

**제 13부칙 개정**

11. 식품규정 제 11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(a) 표의 식품유형 “Confectionery (including hard and soft candy, nougats and marzipans)”삭제

(b) 표의 식품유형 “Decorations, toppings (non-fruit) and sweet sauces” 뒤에 다음의 식품유형 및 감미료 사용기준 추가

	1	2	3	4	5	6
	Acesulfame-K	Saccharin	Cyclamates	Neotame	Steviol glycosides	Sucralose
딱딱한 캔디	500					1800
누가, 마지팬	1000					1800
부드러운 캔디	1000					1800

시행일 : 2020. 08. 31